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3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이정헌·박홍배·박민규

이훈기 · 김 현 · 황정아

허성무 • 한민수 • 최민희

김영환 • 이병진 • 정진욱

서영교 · 임미애 · 박희승

이워택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 생하는 상황임.

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중 "보호"를 "보호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도"를 "제3항에도"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(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 이 경우 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7항의 금액과 달리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의 배우자 승계에 대한 적용례) 제6조의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당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의2(권리의 <u>보호</u> ) ① (생	제6조의2(권리의 <u>보호 등</u> ) ①		
략)	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		
	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		
	망한 경우 그 수당지급 대상자		
	의 배우자(사실혼의 배우자를		
	포함한다)에게 참전명예수당을		
	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 이 경우		
	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		
	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7항의		
	금액과 달리 정할 수 있다.		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<u>③</u> 제1항 및 <u>제2항에도</u> 불구하	<u>④</u> <u>제3항에도</u>		
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			
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			
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			
을 압류할 수 있다.			